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인 이유

2013.12.20 | 이은경_새사연 연구원 | eundust@saesayon.org

취임후 1년, 박근혜 정부가 내 놓은 것은 투자활성화를 내세운 전면적 민영화이다. 대선시 약속했던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는 사라졌다. 뉴스에서는 북한 · 북한 · 북한뿐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기업과 대형의료기관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했다. 민영화이되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분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운하를 4대강으로 바꿔 추진하면서 네이밍의 위력을 실감했나 보다. 의료민영화는 자회사설립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철도민영화는 구간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외투를 입고 재등장했다.

사실 이런 네이밍 기법은 처음이 아니다. 민영화는 80년대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전가의 보도¹⁾였다. 관료화된 큰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실패의 대안’ 으로 추진되었던 민영화는 단어 자체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시장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민영화” 라는 단어는 “탐욕, 반시민, 자본친화, 비민주”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 작은 정부, 민영화는 만병통치약이었다. 외환위기 원인과 한국 경제구조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합리적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과도한 관주도 경제가 한국사회를 망친다.’ 등의 주장은 신화가 되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1) 원래 대단한 자랑거리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요즘은 어떤 곤란(困難)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상투적 수단을 뜻하기도 한다.



그 결과 팔 수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팔려나갔고 팔리지 않은 국공영 회사와 건강보험공단 등 공사들 역시 조직구조와 운영원리 모든 영역에서 시장화되어갔다. 그 결과는 대기업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위기, 공공성의 훼손이다. 이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극화, 시장화의 문제점이 외환위기 당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 정책덕분이라는 문제의식이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고 있다. “민영화”라는 단어는 이제 적어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택한 방식은 무엇인가? 민영화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다. 광범위한 시장실패로 인한 민영화의 문제점을 고민하는 대신 이름을 바꿔 우회할 뿐이다. 이미 의료민영화는 의료산업선진화, 의료관광, 투자활성화 등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본질은 여전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을 놓고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화로 가는 빗장을 여는 것이다” 등의 논란이 많다. 민영화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좋다. 그렇다면 민영화의 의미와 이번 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걸어두고 영리자회사 머리만 씌워 파는 “양두구육”을 하는 건 아닌지….

이번 정부 안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분야

정책과제	세부 정책 방안
1.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1) 의료법인 등도 학교법인과 같이 자법인 설립 허용 -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2)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 촉진,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해외 新시장 개척 지원 (3) 남용방지장치 및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등 보완방안도 병행 (4) 의료취약지역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2. 진출입 · 영업규제 개선	(1) 의료법인가간 합병 허용 (2) 법인약국 허용 (3)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4)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3. 해외환자 유치 촉진	(1) 외국인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 (2)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 허용
4.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1) 보건의료인력 양성 (2) 전문자격 활성화 (3)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5. U-Health 활성화	(1) U-Health 연구개발(R&D) 촉진 (2) U-Health 협업체계 구축
-----------------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먼저 정책과제 1.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문제를 보자.

1. 첫 번째 거짓말 : 한국 병원은 다 영리조직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의료기관은 이미 다 영리조직이다. 민간소유인데 뭘 민영화한다고 하느냐? 민영화가 아니다” 라는 주장으로 현 정부안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이 없고 개인/비영리법인만 존재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인 개인기관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공공기관이다. 정부는 비영리법인의 자회사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개수로 보았을 때 개인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만 전체 보건의료체계로 보았을 때는 25% 수준이며 의사 개인이 자영하는 구조로 회사(법인체)가 아니다.

[표 2] 설립주체별 요양기관 및 요양기관별 개수 현황(2012)

설립주체별 요양기관 현황(2012년)

계		
국 공 립	국립	
	공립	
	군병원	
비 영 리 법 인	학교법인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개 인 기 관	개인	
	기타	

요양기관별 의료법인/전체기관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전체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개인이 아닌 경우, 즉 조직형태를 지닌 의료기관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특수법인이란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각종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의 분류상으로는 각각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다수 개설하고 있는 학교법인,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은 의료법인과 거의 같은 법적 관리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세부적 사안은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에 따른다.²⁾ 또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정 역시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는 없으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³⁾ 는 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전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인의 문제는 모든 의료기관의 문제가 된다.

2. 두 번째 거짓말 : 의료법인만 투자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대표적 주장은 비영리의료기관 중 의료법인만 영리회사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영리회사에 다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의료법인들도 많은 경우 영리회사의 주식을 매입, 투자하고 있다.

[표 3] 의료기관 유형별 주식보유 현황_2013상반기 현재

의료기관명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보유액	보유비율	배당수익률
현대아산병원 (사회복지법인)	현대중공업	1,920,000	76,000,000	1,920,000	2.53
	현대미포조선	86,000	20,000,000	86,000	0.43
을지병원 (의료법인)	삼성전자	418	147,299,337	418	0
	연합뉴스티브이	600,000	12,100,000	600,000	4.96
마리아병원 (의료재단)	마리아바이오텍	150,000	4,200,000	150,000	3.57
삼성병원 (사회복지재단)	삼성생명(주)	9,360,000	200,000,000	9,360,000	4.68

2) 의료법 제50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삼성선물(주)	50,000	2,500,000	50,000	2
	365홈케어(주)	20,000	416,000	20,000	4.8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학교법인)	삼양사	32,518	4,261,893	32,518	0.76
	KB금융	69,211	386,351,693	69,211	0.02
	LG생명과학	2,811	16,576,990	2,811	0.02
	LG화학	31,209	66,271,100	31,209	0.05
	GS	5,639	92,915,378	5,639	0.01
	이수앱지스	133,330	11,241,510	133,330	1.19
	연세기술지주회사	100,000	800,000	100,000	12.5
	엔피온	600	160,000	600	0.38
	일성신약	1,500	2,660,000	1,500	0.06
	해성산업	1,000	9,780,000	1,000	0.01
	치아줄기세포뱅크	15,740	3,330,605	15,740	0.47
	(주)안연케어	200,000	200,000	200,000	100
	동아제약	7,945	11,135,000	7,945	0.07
	삼양홀딩스	43,919	5,756,186	43,919	0.76
	LG	10,475	172,557,131	10,475	0.01
	LG생활건강	8,590	15,618,197	8,590	0.05
	LG하우시스	4,223	8,967,670	4,223	0.05
	연세디지털	300,000	1,796,700	300,000	16.7
	YSPC	499,999	499,999	499,999	100
	뉴트라R&BT	3,500	257,299	3,500	1.36
	유택컴	1,800	50,000	1,800	3.6
	대한광통신(주)	11,481	15,130,520	11,481	0.08
	디지털프로그	6,600	66,800	6,600	9.88
에이티젠	21,255	6,588,012	21,255	0.32	
(주)비주얼샤워	15,000	15,000	15,000	100	
가톨릭성모병원 (학교법인)	평화아름	200,000	200,000	200,000	100
	평화드림	140,000	140,000	140,000	100
	대한교과서	4,510	0	4,510	0

출처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http://npoinfo.hometax.go.kr/distribution/wepa8810.jsp>

다른 법인형태가 투자, 사업 확대에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회복지재단, 학교 재단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의료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 여타 복지사업, 장학



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이지 현재 의료법인만 투자를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1년 을지병원에서 방송업체에 투자할 당시, 복지부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 당시 감사원에서는 의료법상 금지한 영리추구는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그럼 대체 어떤 규제를 없애서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일까? 실상은 규제덕분에 산업화가 되지 않는다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보다 수월하게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정수준의 투자와 MOU 등을 통한 공동사업은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영리적 목적의 부대사업과 병원과 연계된 의료산업 회사들 간의 자본이동에 대해서는 의료법-복지부-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어지는 공적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번 법안의 핵심적 목적이 있다. **광범위한 영리적 부대사업과 원활한 자본이동, 이는 의료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법인의료기관의 숙원이다. 의료법인병원만 갖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주는 수준이라는 정부 발언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3. 세 번째 거짓말 :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혜택을 줄인다?

비영리법인의 핵심은 공공성, 사회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영리가 아닌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 의료 등과 같은 사업은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의 특징

이도적·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이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한다.

공공성·사회성을 조직의 기초로 한다.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증여시 세제혜택이다. 교육의 경우, 사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학술과 공공목적의 교육 같은 공익적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에만 교육과정인정, 세제혜택, 설립 지원 등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각종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등을 과세한다.

○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과 일정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참고 : 의료법인병원은 당해 연도 수익이 실현된 경우 해당 수익금의 50%만 법인의 정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 손금산입으로 인정됨(나머지 법인형태는 100%)

출처 : 국세청 <http://goo.gl/EGkhhb0>

여기에 이번 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거나 영리법인을 소유, 투자할 수 없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설립지원, 세제상혜택, 청산에 대한 지분보장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 반면 영리목적의 사업과 투자를 하지는 못했다. 이번 정부안은 두 혜택을 모두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비영리의료기관이 영리적 수익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처음 무너진 것은 2007년 의료법인 부대사업이 허용되면서부터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영리추구행위가 부대사업 허용으로 일부 빗장이 풀렸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의료법에 준해야 하며 의료기관들이 보기에 불충분했다. 이번 정부안은 그나마 의료법에 막혀있던 부대사업의 범주를 풀고, 상법상 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네 번째 거짓말 : 성실공익법인은 진입장벽이 될 수 없다?

정부입장은 “사실상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10%이상의 주식취득을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두었다. 1)성실공익법인만 영리자회사 허용 2)영리자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사실상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란 대체 뭐가? 이름도 너무 어렵다. 쉽게 말해 공익법인 중 세법상 추가적 혜택을 주기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에 한해 성실공익법인이라고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의료기관 중 이 조건에 충족되는 기관만 영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기준은 크게 소득의 80%이상을 본래 의료업에 사용할 것, 출연자와 관계있는 이사의 수를 1/5이하로 할 것, 자기내부거래나 광고/홍보를 하지 말 것 등이 있고 관련 서식에 맞춰 5년에 한 번 씩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구체적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성실공익법인의 기준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
-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 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2013.2.15]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영리자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이 되지 못한다. 현재도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 광범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정정도 서류상기준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의 기준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외부 회계, 감사를 활용해서 서류처리만 잘 하면 별 문제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2012년까지는 신고제에 불과했고 올초 기준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서류적 절차문제이다. 따라서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은 대부분의 의료법인에서 충족할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되지 못한다.

또한 영리자회사는 상법상 영리회사임이 확실하다. 모회사가 비영리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영리자회사의 영리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 의료기관을 제외한 다른 공익법인들은 다양한 자회사-연계회사와 투자/지분공유/자본출자 등을 하고 있다. 그 기관들의 공익성이 담보되고 있는가?

5. 다섯 번째 거짓말 : 영리법인만 허용할 뿐 상속·증여에 대한 혜택없다?

현재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다. 정부안은 이 규제를 푸는 대신 영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한다. 하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에게 영리활동 허용+비영리기관으로서의 혜택 부여” 둘 다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비영리법인으로 혜택을 받는 대신 영리적 활동이나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이 규제를 풀어 영리자회사를 세우거나 지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어도, 비영리조직으로써 받았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익법인이 영리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현행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혜택으로 상속/증여세 면제가 있다. 다른 법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출연할 때 의결권있는 주식/출연재산의 5%(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10%까지)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벌과 상관없는 공익법인에 다른 영리법인이나 다른 성실공익법인이 투자할 경우, 3년내 매각하기만 하면 10% 이상일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준다.(이번 정부안은 10%이상일 경우, 주무장관의 허가절차를 두고 3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30%면 막대한 지분이다.)



영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도 공익법인은 재벌집단 상속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분소유가 5%이상시 상속/증여세를 내게 하고 있지만 그보다 낮은 비율로도 얼마든지 기업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다. 그 비결은 기업내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소위 지주회사와 공익법인이 상호출자,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그나마 공익법인 중 의료업을 하는 법인만 영리회사에 출자하지 못했던 규제를 풀어 의료기관 역시 재벌/대형의료기관의 출자/영향력 행사 행위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조사 결과 2013년 현재 하나의 공익법인이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종목 42개 중 12개 회사가 사실상 지주회사 등 그룹 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한 계열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의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주식을 각각 4.68%씩 총 9.36%를 보유 중이며, 동부그룹 동부문화재단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3개 계열회사 지분을 모두 3~5% 보유하고 있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3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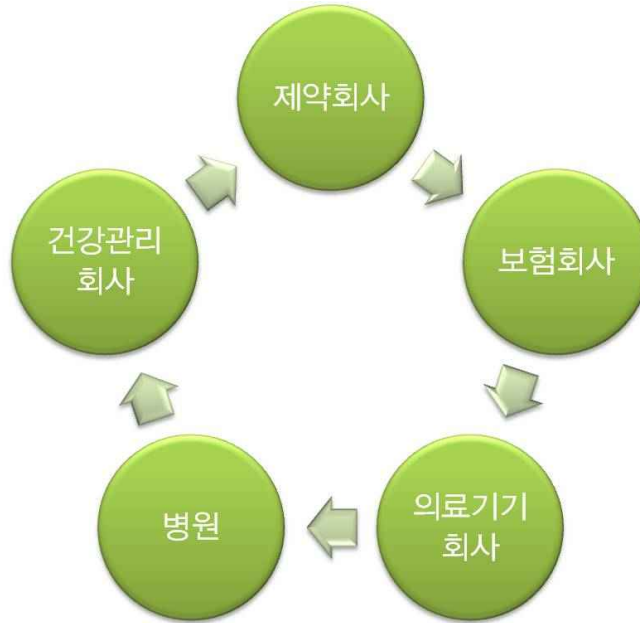
따라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재벌병원들이 영리자회사 설립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재벌병원 진출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출연재산의 5%이상을 소유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일 뿐이다.** 원래 있는 규정에 불과하고 새로운 진입장벽을 재벌병원들에게 둔 것이 아니다. 5%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도 얼마든지 기업 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다. 건강관리-병원-제약-보험-의료기기로 이어지는 헬스케어 산업 복합체에서 다른 영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일정 지분만 투자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여섯 번째 거짓말 : 의산복합체 재벌집단의 탄생 아니다?

의산복합체라는 말이 있다. 제약회사-보험회사-의료기기회사-병원-건강관리회사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보건산업 클러스터를 일컫는다. 지금은 헬스케어산업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현재 삼성을 필두로 대부분의 재벌들은 헬스케어산업에 진출해있으며 재벌집단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이다. 하지만 현 의료법의 규정을 받는 의료기관은 이러한 고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재벌집단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거래를 활성화하고 독점을 형성하여 산업전체의 지배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유/운행을 결정하는 지배구조가 중요하다. 이번 정부안은 영리자회사라는 규정을 통해 이를 위한 길을 터준 것이다. 의료기관 상속·증여문제 해결만이 아니다.



[그림 1] 의산복합체 재벌집단의 구성 예시



우리나라 대표 재벌집단인 삼성을 기초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삼성은 제약회사-보험회사-의료기기회사-병원-건강관리회사 모두를 가지고 있다.

● 삼성 제약회사

삼성그룹 바이오제약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
삼성그룹이 지난 2월 25일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바이오제약 합작사는 자본금 3,000억원 규모로 인천 송도에 설립되며, 합작사에는 삼성전자(40%), 삼성에버랜드(40%), 삼성물산(10%) 등을 비롯해 다국적 CRO 기업 쿼타일즈(10%)가 지분을 투자하게 된다. 이번 바이오제약 합작사 설립은 삼성그룹의 5대 신수종 사업과 관련한 첫 번째 구체적인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HMC투자증권 산업&이슈리포트, 2011. 2. 28

● 삼성 의료업체 인수합병(M&A)현황

	회사명	분야	국가
2010년 9월	레이	디지털엑스레이	국내
2010년 11월	메디슨	초음파 진단기기	국내
2011년 11월	넥서스	혈액검사기	미국
2013년 1월	뉴로로지카	CT	미국



● 삼성 보험회사

- 삼성생명
- 삼성화재

둘 모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업계 1위의 대표 보험회사이다.

● 삼성의료원

- 삼성의료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삼성생명 과학연구소로 이루어져 있는 성균관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의 교육병원이다.

● 삼성건강관리 회사

- 365 홈케어 : 삼성그룹 계열사로 삼성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삼성 365 홈케어 서비스



▶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설문 및 상담, 생활습관 등을 통해 개인별 건강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비롯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Health Planner의 개인별 건강 컨설팅

고객과 전문 간호사 Health Planner의 1:1 배정을 통해 평생건강관리 스케줄 수립과 관리 및 건강 컨설팅 제공



▶ 온라인 상담

주치의,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과의사가 참여하는 이메일 상담과 실시간 화상 채팅 상담 실시



▶ 맞춤형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고객정보의 DB화를 통한 건강/의료 정보와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테마클리닉 운영

병원 및 Off-line 제휴업체와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 암, 성, 여성, 다이어트, 영양, 스포츠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클리닉 운영



▶ 다양한 커뮤니티 제공

건강상태 및 관심분야별 고객 맞춤형 커뮤니티 제공

출처 : <http://www.365homecare.com/company/P3HIN0103.jsp>



● 삼성 ICT 관련 회사(U-health)

단말기제조회사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테크윈
솔루션 제공회사(소프트웨어)	삼성 SDS
통신서비스제공사	삼성 네트워크

여기에 의료기관이 직접 영리자회사를 설립/투자해 영리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익법인으로 세제상 혜택까지 그대로 받게 되었다. 가히 의산복합체의 지주회사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구상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게 세부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꼼꼼하게 준비한 의료민영화 대책

가. 환자 돈으로 제품개발

정부안을 보면 의료기기, 제약산업을 위한 연구사업에도 고유목적사업금을 쓸 수 있게 했다. 위의 모든 기관들은 전부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의료기기, 제약, 유헬스를 위한 ICT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의료기관의 수익금을 전부 쓸 수 있게 된다. 세제혜택까지 받으면서, 기업활동을 위한 R&D에 공적자금을 쓰는 것은 공정성 훼손이라는 지적으로 줄여가고 있지만 거꾸로 가는 것이다.

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 포기

그 다음 단계는 개발된 의약품, 기기,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시 의료기기와 제약, U Health 기기와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한다.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은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다른 비교 제품에 비해 경제성, 신규성 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 몇 년전 부터 한국형 신약개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신속허가제도 등을 시행해왔다. 임상시험은 규제가 너무 낮아 전세계 임상시험의 메카가 되는 형편이다. 그나마 부족한 허가과정을 산업육성을 위해 더 단축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



다. 정부가 시장을 열어준다.

더 나아가 원격의료, 홈케어 주거시설 등 U-Health 세팅을 위해 세금까지 쓰겠다고 한다. 유망 U-Health 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개발 및 판촉 지원, 부처별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의 계획이 그것이다. 시장이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를 깔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의 수익을 위해, 건강상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기술과 기기를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한다.

라. 의료관광을 핑계로 지속적 규제완화

여기에 의료관광이 덧붙여진다. ‘해외 환자의 돈을 쓰게 한다.’ 참으로 매력적인 주장이다. 그를 위한 메디텔이 허용되었고 의료기관은 영리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의료법인 등의 해외 진출 목적 자법인 허용이다. 진단·치료 등 국내 의료업은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하게 했으나 해외 의료수출은 영리회사가 담당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더 나아가 해외환자 대상 영리병원 역시 자회사로 설립/투자가 가능하다.

8.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못하는 정부?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의 영리적 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이 건강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의료공급(대학, 의료기관)-의료재정(건강보험)-기술 및 제품(제약/기기 등)-의료체계(전달체계, 정책, 규제 등)의 복합체이다. 민영화란 소유권의 이전만이 아니라 이 과정 전반에 공적인 개입이 줄어들고 시장/경쟁적 요소가 지배적이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소유권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 조건에 불과하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표 6] 민영화의 개념

범위	핵심요소	개념	정책방향	방식
협의	소유권	(공기업) 소유권의 이전	탈국유화 (denationalization)	공기업 지분매각
광의	경쟁	경쟁적 요소의 도입	자유화 (liberalization)	민간위탁, 구매 권제도
				규제완화



한국 의료는 서비스 선택, 가격결정, 기관 간 경쟁, 새로운 기술/제품의 도입 등 전 영역에서 시장/경쟁적 메커니즘이 지배하고 있다. 그나마 의료법-복지부-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과 의료에 대한 공적규제가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고 있다. 건강보험이 민영화되는 것은 민영화의 끝단계이다. 그 앞에 영리자회사, 영리활동 허용, 제약/기기 산업 독점형성, 의료서비스 가격 폭등, 사적 민간보험 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그 앞단계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이제 마지막 문을 열려고 한다.

이번 정부발표는 민영화의 우회로, 빗장열기가 아니라 민영화 자체이다. 방법은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막을 수 있었던 단 한가지는 촛불이었다. 다 추진했는데 의료만 못 막았다는 비판이 청와대 내부에 거세다고 한다. 07년 촛불보다 더 큰 촛불만이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 🕯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2월 20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다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김병권
이슈진단	6/17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여경훈
이슈진단	6/27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김수현
이슈진단	8/13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여경훈
이슈진단	10/8	인구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여경훈
이슈진단	10/11	2014년 정부예산안 평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부문	최정은
이슈진단	10/14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김수현
이슈진단	10/24	동양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여경훈
이슈진단	10/31	동양 사태가 보여준 재벌 개혁의 필요성	김병권
이슈진단	11/04	지뢰밭 속의 순항? : 2014년 경제 전망	정태인
이슈진단	11/05	유아 공교육, 사교육에 잠식되다	최정은
이슈진단	11/07	여전한 성별임금격차 문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김수현
이슈진단	11/11	대한민국 협동조합 현 주소 : 지역, 연령, 유형별 분석	김병권
이슈진단	11/15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과 부동산 책 방향	김병권
이슈진단	11/26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 격차 확대	여경훈
이슈진단	12/20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인 이유	이은경